

# 개정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설명회 개최

- '23.11.23일,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, 유동화업무 담당자 등 누구나 참석 가능

11.23일(목)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, 한국예탁결제원,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4.1.12일 시행 예정인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 금융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과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. 또한,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추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만큼, 동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.

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. 금융위원회는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개정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.

## < 개정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설명회 개요 >

- 일시 : `23.11.23(목) 14:00~16:00
- 장소 : 금융투자협회 교육원 리더스홀
- 주요 내용

주요 내용	발표자
① 자산유동화법 개정 배경, 주요 개정내용, 향후 일정	금융위
② 정보공개 의무, 위험보유 의무 등 주요 준수사항	금감원
③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방법	예탁원
④ 질의응답	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	책임자	과 장	김광일 (02-2100-2680)
		담당자	사무관	조윤수 (02-2100-2682)
	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	책임자	국 장	이 석 (02-3145-8100)
		담당자	팀 장	고병완 (02-3145-8090)
	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부	책임자	부 장	김종현 (051-519-1780)
		담당자	팀 장	안병욱 (051-519-1785)
	금융투자협회	책임자	팀 장	김중흥 (02-2003-9120)
		담당자	부부장	우재일 (02-2003-9126)



**① 자산보유자 확대 등 등록유동화 제도 정비**

-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여 자산보유자 기준을 완화\* 하고, 다양한 기초자산\*\*의 유동화를 허용

\* (현행)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(BB등급 이상) → (개정)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(자산, 자본잠식률, 감사의견 등 감독규정에서 요건 구체화)

\*\* (현행) 채권·부동산 중심 → (개정) 지식재산권 등도 명시

-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(SPC)를 허용\*하고, 자산관리자 자격을 완화\*\*

\* (현행) 유한회사로 제한 → (개정) 유한회사 외에 주식회사 형태도 허용

\*\* (현행) 신용정보업자의 경우, 신용평가·신용조회·채권추심업의 모든 허가 필요  
→ (개정) 자산관리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채권추심업 허가만 필요

**② 유동화증권 발행내역등 공개 의무 신설**

- 등록·비등록 유동화증권 발행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\*을 공개하도록 의무 부과

\* 발행내역(유동화증권 종류, 발행금액, 만기 등), 거래참여기관(자산보유자, 자산관리자 등), 기초자산, 신용보강 정보, 위험보유 정보 등

**③ 유동화증권 위험보유 의무 신설**

-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(5%)를 보유하도록 의무 부과

- 국가·지자체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의무 면제

➔ 개정 자산유동화법을 통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자산유동화 시장의 투명성·건전성 제고를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기대